

12-가. 연구비 수혜 실적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: **대학** 대학원 **전문대학** **대학원대학**

【공시시기】: 2024년 8월

【공시방법】: 간접입력(한국연구재단)

【공시내용】: 2024년 학과별 전임교원의 전년도(2023년) 연구비 수혜실적

【공시양식】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(전임교원) 2024. 4. 1., (연구비) 2023. 1. 1. ~ 12. 31.)

(단위: 명, 건, 천원)

기준 연도	단과대학	학과	전임교원		연구비 지원												
					계				교내				교외				
					교외		중양정부		지자체								
					과제	연구비	과제	연구비	과제	연구비	과제	연구비	과제	연구비	과제	연구비	
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	

연구비 지원				대응자금(연구비)				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			
교외											
민간		외국		교내		교외		교내		교외	
과제	연구비	과제	연구비	과제	연구비	과제	연구비	과제	연구비	과제	연구비
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

12

교원의
연구·학생에
대한 교육 및
산학협력
현황

■ 검증사항

【전임교원 합계】: <6-가>, <7-가>의 전임교원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함

■ 작성지침

【전임교원】: 2024. 4. 1. 기준 재직 중인 전임교원(휴직교원 포함)을 말하며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분류

※ 외국인 전임교원 포함(<6-가> 전임교원 기준)

※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

【작성기준】

- 연구책임자 소속 대학, 학과 기준으로 작성
(예 1: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'A'대학 연구과제에 타대학 교수가 참여한 과제의 경우,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'A'대학의 과제 수, 연구비로 취급)
(예 2: A, B, C 3개 학과 소속 교원이 함께 참여한 연구과제의 경우, 연구책임자가 A학과 소속이면, A학과의 과제 수, 연구비로 취급)
- 두 기관 이상에서 지원받은 연구의 경우 지원규모가 더 큰 기관 기준으로 작성
(예: 중앙부처(60%), 지자체(40%)로 예산을 지원 받았을 경우 중앙부처에 과제수, 연구비를 기입)
- 단순 장학금 및 재정지원 사업(예: BK21,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),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연구장려금,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교내지원 연구과제 등은 제외
- 연구비 내역 중 2022년 연구비는 제외(전년도 연구비에 해당하는 이월액, 이자발생액 제외)

【연구비】

- 2023년도 계약(협약)된 금액으로, '현금'만 포함(다년과제인 경우, ④번 참고)

- ② 연구비에는 간접비를 포함하되 KRI 입력 시, 반드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함
- ③ 연구비에는 교내·외 대응자금을 포함하지 않고, 대응자금은 별도로 입력
- ④ 연구과제가 다년 과제인 경우, 2023년 연구비만 계산
(예: 총 연구비 4억 원에 3년 과제가 2차년도인 2023년도에 연구비가 1억원으로 책정되면 연구비는 1억원으로 기재)

※ 제외: 현물 (자료의 정확성 검증 불가)

- ⑤ 총괄과제에 포함되는 세부과제일 경우, 세부과제 단위로 해당 연구비 입력

【과제】: 2024. 4. 1.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서 2023년도에 수행한 과제의 계약(협약) 건수

【연구비 지원구분】: 교내와 교외(중앙정부/지자체/외국/민간)로 구분

- 교내: 대학자체(교내)에서 지원한 연구비
- 중앙정부: 중앙정부(지자체 제외) 및 각 부처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
- 지자체: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
- 외국: 외국정부, 민간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원된 연구비를 의미함
- 민간: 정부 이외의 민간 사업체, 연구소 등에서 지원한 연구비

※ 재원과 지원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: 지원기관을 기준으로 입력

【대응자금】: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(협약)된 대응자금 금액

※ 제외: 현물(자료의 정확성 검증 불가)

- 교내: 해당 과제의 지원연구비에 대응되는 교내의 계약(협약)된 대응자금(자금 출처-교내)
- 교외: 해당 과제의 지원연구비에 대응되는 교외의 계약(협약)된 대응자금(자금 출처-교내 이외의 기관)

【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】

- 교내: (교내연구비 + 교내대응자금) / 전임교원 수
- 교외: (교외연구비 + 교외대응자금) / 전임교원 수

■ 참고사항

- 연구비 수혜 실적은 한국연구재단(KRI 조사)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